



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정보공개청구서 결정 처리(No.3169682)

우리 구로 2015.09.10.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코자 합니다.

가. 내용 : *****상 건물 도면

나. 근거 : [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]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

다. 공개 결정 여부 : 비공개 결정

라. 사유

- 우리 구 *****상 건물 도면에 대하여 정보공개 요청된 사항은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어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해 당사자가 사생활 침해 및 건물 안전과 보안상의 문제로 비공개 요청하였고,

- 건물 도면이 공개될 경우 건물 내부의 평면 등이 노출되어 사생활의 침해 및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 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한 비공개 대상이므로 비공개 처리코자 함.

첨 부 : 1. 결정통지서 1부.

2. 제3자 의견서(비공개 요청서) 1부. 끝.

